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11월 26일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11월 12일, 고성미 의원  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2일  
다. 상정일자 :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중  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11월 26일)  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최근 청소년 범죄의 다양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커짐에 따라 법무부 산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관내 청소년을 유해 환경과 탈선으로부터 보호하고 범죄예방과 선도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,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안 제2조).
- 지방보조금의 지원범위, 지원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 ~ 안 제4조).
- 지도 및 점검의 근거 조항을 마련함(안 제5조)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  
나. 검토의견

## 1) 제정 이유

○ 본 제정안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청소년 선도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의원발의됨.

## 2) 주요 내용

가) 조례 제정의 목적,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안 제2조).

- “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(이하 “금천지구위원회” 라 한다)” 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 협의회 산하에 소속되어 금천구에서 청소년 선도, 범죄예방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된 단체로 정의함

나) 지방보조금의 지원범위, 지원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~안 제4조).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에서 보조금 지원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금천지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 봄

다) 지도 및 점검의 근거 조항을 마련함(안 제5조).

## 3) 검토 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선도를 위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며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생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